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혜지 의원(찬성자 : 21명)

나. 의안번호 : 제 3173 호

다. 발의일자 : 2025. 10. 20.

라. 회부일자 : 2025. 10. 23.

2. 제안이유

- 관련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의된 용어를 삭제하여 해당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의 규정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련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의된 용어 등을 삭제함(현행 제2조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5. 10. 28.~11. 01.)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의된 용어를 삭제하여 해당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의 규정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별 검토의견

가. 용어 정의 삭제(현행 제2조 삭제)

- 현행 제2조의 삭제는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수원’ 용어가 상위법령과 대상범위 등에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또한,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질개선사업’의 경우 상위법령과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표 1]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7조·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2. “수질개선사업”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삭 제>

- 먼저, 현행 제2조제1호는 ‘상수원’을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수도법」 제3조제2호1)는 ‘상수원’을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해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에서 ‘상수원’이라는 일반적인 법률 용어를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국한하여 정의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정의와 달라 법령 해석상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또한, ‘상수원’ 용어는 조례 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바 존치 실익도 없어 보임.
- 다음으로, 현행 제2조제2호는 ‘수질개선사업’에 대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13조²⁾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³⁾에 따른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 이는 상위법령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재정의한 것으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본

1)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의 협의를 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조례의 단순성에 비추어 볼 때 삭제하더라도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현행 조례 제5조에서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⁵⁾에 따른 사업”과 같이 상위법령 조항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오히려 법령과 조례 체계상 바람직해 보임.

나.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3호, 제5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서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구를 삭제하고 「한강수계법」 제16조⁶⁾만 인용토록 정비하려는 것임.

[표 2]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 현행 조문은 특정 사업(잠실상수원 수질개선)에 한정된 표현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가 협소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한강수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현행 조례 제2조의 삭제에 따라 종전의 제3조를 제2조로, 종전의 제3조의2를 제3조로 조문 번호를 정비하면서, 안 제2조는 종전의 제3조 본문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수정하려는 것인데,
 - 특히, 안 제2조는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의 약칭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본문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풀어서 표기하려는 것으로 조례 체계상 타당한 조치라 하겠음.
- 안 제4조제3호 역시 현행 조례 제2조의 삭제로 인해 해당 조항에서 「한강수계법」이 처음 인용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정확히 명시하고 약칭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
-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인용 형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표 3]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3호,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운영)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2조(관리·운영)	-----	
제3조의2(생략)		-----	서울특별시장	-----
		제3조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한강수계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
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 5. (생 략)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한강수계법 제17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세입) -----.

1. · 2. (현행과 같음)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
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 5. (현행과 같음)

제5조(세출) ----- 「한강수계법」 제17조제2
항 -----
--.